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197 호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년 월 일<br>(제 266 회) |

**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 
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청북도교육감      |
| 제출연월일 | 2007년 12월 4일 |

##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197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07. 12. 4.
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제안이유

시·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(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-2127, 2007.11.14)이 재산정 고시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

###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,072명에서 41명이 감원된 3,031명으로 함(안 제2조)

(1)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: 변동없음

(2)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:  
3,059명⇒3,018명(감 41명)

### 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 발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련부서간 합의여부 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 :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

##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“3,072명”을 “3,03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중 “3,059명”을 “3,018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 정 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원의 총수) 도교육청에 두<br>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<br><u>3,072명</u> 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<br>호와 같다. | 제2조(정원의 총수) .....<br>.....<br><u>3,031명</u> .....<br>..... |
| 1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<br>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<br>각급학교 : <u>3,059명</u>                  | 2. ....<br>.....<br>..... <u>3,018명</u>                    |

## 관 계 법 령 발 체 서

### 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(개정 2004.1.29 대통령령 제8247호)

제14조(표준정원의 책정)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(이하 “표준정원”이라 한다)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
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·분합,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.

제19조(정원의 규정) ①시·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
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

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 
(개정 2004.1.30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4호)

제3조 (표준정원의 산정)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·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.

②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·직렬별로 정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영 제14조제2항에서 "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"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.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(이하 "보정정원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.

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.

[별표 1] &lt;개정 2004.1.30&gt;

**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(제3조제1항관련)****1. 특별시·광역시**

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 $+(5.793702 \times \text{학교수} \times \text{증감분} \times 0.6 + 0.1919011 \times \text{학급수} \times \text{증감분} \times 0.4) \times 1.15 + 70.9 \times 2$  국6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 $+57 \times 4$ 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 $+40.3 \times 2$ 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

**2. 도**

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 $+(5.022132 \times \text{학교수} \times \text{증감분} \times 0.6 + 0.3594281 \times \text{학급수} \times \text{증감분} \times 0.4) \times 1.15 + 61.6 \times 2$  국6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 $+51.5 \times 4$ 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 $+31.6 \times 2$ 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

**비 고**

1.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은 각각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.

**가. 특별시·광역시**

$[\text{현정원} + \{1.720094 \times (\text{학급수} \div \text{학교수}) \text{의 자연로그값}\} \times \text{학교수} + 168.1659 \times 2 \text{ 국6과 지역교육청수} + 177.8311 \times 4 \text{ 과 지역교육청수} + 105.4566 \times 2 \text{ 과 지역교육청수} + 161.7123] \div 2$

**나. 도**

$[\text{현정원} + \{1.910288 \times (\text{학급수} \div \text{학교수}) \text{의 자연로그값}\} \times \text{학교수} + 123.1787 \times 2 \text{ 국6과 지역교육청수} + 49.33297 \times (2 \text{ 과 지역교육청수} + 4 \text{ 과 지역교육청수}) + 225.1432] \div 2$

2.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는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3.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 증감분은 각각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에 대한 당해연도의 증감분을 말하며, 해당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**□ 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**

(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-2127, 2007. 11. 14)

| 구 분     | 표준정원  | 보정정원 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충청북도교육청 | 3,031 | 3,121 |     |